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6. 11 선고 2020가합78431 판결 [계약금등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6. 16 선고 2021나203807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6. 11 선고 2020가합78431 판결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한별

담당변호사 조상원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1. 6. 4.

판 결 선 고 2021. 6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4,66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7. 8. 14. 피고와 로봇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을 제작, 공급,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당일 계약금으로 261,669,000원, 같은 해 9. 28.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대금 중 일부로 43,000,000원을 각 지급하였다. 그런데 위 계약의 목적인 ‘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’은 그 달성이 애당초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304,669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장한홍, 판사 정현욱, 판사 강대현